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 12. 15 선고 2021가단1048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영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문영기, 강영철)

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안준표

변론 종결2021. 11. 24.

판결 선고2021. 12. 15.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6. 11. 1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 2. 26. 접수 제35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6. 11. 1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 2. 26. 접수 제3583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는 2015. 10. 12.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단위: 원).

KAMCO	카드론	2,300,000	5,947,897	8,247,897
C	신용카드	6,314,622	16,683,346	22,997,968
계	8,614,622	22,631,243	31,245,865	

2) 한편 D 유한회사는 2005. 3. 31.경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받았었고, B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30381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3) 그 결과 "B는 D 유한회사에게 31,245,865원 및 그 중 8,614,622원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6. 9. 9.자 지급명령이 2017. 1. 10. 확정되었다.

4) D 유한회사는 2018. 10. 27. 원고에게 위 3)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9. 7. 30. B에게 내용증명우편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상속 관련 사항 등

1) B는 피고의 동생이고, E은 피고와 B의 아버지이다.

2) E은 2016. 11. 17. 사망하였다. E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F, 직계비속 5명(피고, G, H, I, B)이

있다.

3) E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다. E이 사망한 후 피고와 B를 비롯한 E의 상속인들은 2016. 11. 17. 위 부동산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 2. 26. 접수 제358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 2. 26. 접수 제358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4)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B는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원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협의분할 이전에 원고가 양수한 B에 대한 채권이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양수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감소하거나 소극재산이 증가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이 심화되는 경우를 말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B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이 사건 협의분할 결과 B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어지게 되는 반면, 소극재산은 D 유한회사에 대한 양수금채무가 그대로 존재한다).

다. D 유한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양수금채권이 발생한지 10년 이상 경과하였고(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30381호 지급명령은 이 법원 2006가소1027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신청된 것이었다), 그 액수가 비교적 거액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B가 계속하여 변제하지 못한 사정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B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B는 이 사건 협의분할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B의 사해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라. 결국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다.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와 채무자인 B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인 2/13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협의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은 아버지 E과 어머니 F을 모시면서 사실상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던 장남인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게끔 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오히려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피고는 선의의 취득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가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원식

별지